

심의결과 원안메트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안자
106	30	2017.12.29	홍재 신명현

의안 "금정기관의 예금저축준비에 관한 개정" 일부개정

의결사항 '금정기관의 예금저축준비에 관한 개정'을 별안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제외관계 법구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7조

제외회지 정부 및 해외부에서 동화가 계속 환수되고 수출증강 등 정책자금의 회입이 증대됨에 따라 금정기관 특히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과도한 투입자극원상환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은행 고환의 예금저축준비율을 인과 함으로써 이를 완화하고 나홀러 수회개선을 통한 금정기관의 건실성강화를 도모하고자 본안 정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를

2017

참고사항 1. 제외관계 범위조항

(한국은행법 제 57조)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고하여야 할 예금저축준비금의 회계帳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예금저축준비금의 용은 제 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원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림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한국은행법 제 5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57조, 제 58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간부예금 또는 기타 금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
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100분의 25까지 한
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2. 철 부 불

가. 기준상황 개요

나. 기준조정비용

다. 기준을 인하여 따른 80년중 은행별 해
제자금규모 및 수리개선 효과

라. 통화금융 추이

마. 예금지급준비율 변천 추이

바. 주요국의 기준을 현황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현

행

제 1 조 (목적)

(생략)

제 2 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20%
요구불 예금	27%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2020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11%
요구불 예금	20%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행

행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저축성 예금	17%
	요구별 예금	2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저축성 예금	15%
	요구별 예금	20%

③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
2%로 한다.

제 3 조 ~ 제 6 조

(생략)

(신설)

2021

<첨부분>

가 支 分

개 상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저축성 예금	2%
	요구별 예금	1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저축성 예금	2%
	요구별 예금	13%

③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
2%로 한다.

제 3 조 ~ 제 6 조

(관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은 1980.1.8 (1월 8일)부터 시행한다